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56

발의연월일: 2022. 6. 27.

발 의 자:유경준·강대식·김상훈

배준영 • 배현진 • 신원식

이채익 • 정우택 • 조명희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는 2004년에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관련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한도에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자목·러목 및 머목).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자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로하고, 같은 호 러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머목 중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급여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급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자목·러목 및 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실	자. <u>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u>
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	자 물가상승률(「통계법」
의 급여	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
	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대
	<u>통령령으로</u>
차. ~ 더. (생 략)	차. ~ 더. (현행과 같음)
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식	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
사 또는 식사대	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4. ⋅ 5. (생 략)

급여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
률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급여
버. ~ 저.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